

의안번호	2214355
의 퇴 인	박덕흠의원
회 답 일	2025.12.23.
추 계 번호	25D6242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1조 1,512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5조 2,125억원(연평균 11조 425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44조 1,700억원(연평균 8조 8,340억원)
- (지방비) 5년간 11조 425억원(연평균 2조 2,085억원)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	111,512	110,966	110,422	109,881	109,343	552,125	110,425
국비(80%)	89,210	88,773	88,338	87,905	87,474	441,700	88,340
지방비(20%)	22,302	22,193	22,084	21,976	21,869	110,425	22,085

주: 본 추계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수 및 지급단가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자 수, 지급단가, 수급 제외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지급대상) 및 안 제6조(지급금 액 및 지급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금액은 연 24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함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중 100분의 80 이상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자료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5조(지급대상) 및 안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2	안 제9조(자료조사 등)	×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출장비 등이 발생할 수 있 으나 현 시점에서 현지조사 실시 여부 및 빈도 등을 예측하 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제6조제1항¹⁾에 따라 기초연금은 연간 24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이하 “기초연금”이라 한다) 수급 대상이 되는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²⁾은
2021년 10월 고시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함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인
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주기는 5년으로 2021년
10월 최초 지정되었으므로 2026년 10월 재지정될 예정임

1)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
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24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 략)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
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다만, 현 시점에서 재지정될 인구감소지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 지급 대상 지역을 현재 기준 인구감소지역으로 함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 현황
- 제정안 제5조³⁾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있는데, 추계기간동안의 거주민 인구 추계는 2024년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2021년 10월)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인구증감율을 적용함
 - 한편, 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인구의 유입에 대한 통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제정안은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수급권의 상실, 환수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각 사유에 해당하게 될 인원의 추정이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중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상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대상자 선별에 한계가 있음
- 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산출

- 제정안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2024년 인구감소지역 인구수에 인구감소지역 지정(2021년 10월) 이후인 최근 3년 인구 증감율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추계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수는 2021년 이후 연평균 전년대비 0.49% 감소함
[참고자료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현황(2021~2024년)

3) 제5조(지급대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2년 이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표 2]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 2021~2024년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인구감소지역 (대상지역 89개)	총 인구 수	4,785,658	4,745,423	4,744,755	4,715,326	-
	전년대비 인구 증감	-	△40,235	△668	△29,429	△23,444
	전년대비 증감율	-	△0.84%	△0.01%	△0.62	△0.4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구감소지역의 2024년 기준 인구 수에 최근 3년간 인구 증감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동안 인구 수를 아래 표와 같이 가정함

[표 3] 인구감소지역 인구 예상: 2027~2031년

(단위: 명,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인구감소지역 인구 수	4,646,350	4,623,583	4,600,927	4,578,383	4,555,9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초연금 지급단가

□ 1인당 기초연금 지급단가는 매년 240만원으로 가정

- 제정안은 연간 240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제정안에 규정된 연간 하한 금액인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다. 분담률

□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은 80:20으로 가정함

- 제정안 제6조⁴⁾는 국가가 기초연금 중 100분의 80 이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을 80:20으로 가정함

4)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중 100분의 80 이상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추계결과

- 추계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1조 1,51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55조 2,125억원(연평균 11조 425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44조 1,700억원(연평균 8조 8,340억원)
 - (지방비) 5년간 11조 425억원(연평균 2조 2,085억원)

[표 4]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연금 지급대상자 수 (A, 천명)	4,646	4,624	4,601	4,578	4,556	—	—
1인당 연간 지급액 (B, 백만원/명)	2.4	2.4	2.4	2.4	2.4	—	—
추가재정소요 (C=A×B, 억원)	111,512	110,966	110,422	109,881	109,343	552,125	110,425
국비 (D=C×80%)	89,210	88,773	88,338	87,905	87,474	441,700	88,340
지방비 (E=C×20%)	22,302	22,193	22,084	21,976	21,869	110,425	22,08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수 및 지급단가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자 수, 지급단가, 수급 제외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assembly.go.kr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 현황(「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참고자료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현황(2021~2024년)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4,785,658	4,745,423	4,744,755	4,715,326
부산	서구	104,130	104,824	103,883	103,413
	동구	86,035	85,918	87,477	85,665
	영도구	112,834	109,889	109,389	106,825
대구	서구	165,455	160,754	161,396	164,110
	남구	144,898	142,675	141,259	136,118
	군위군	21,285	21,797	21,799	21,493
인천	강화군	65,834	66,420	66,246	66,309
	옹진군	18,984	19,329	19,286	19,192
경기	연천군	41,642	41,288	41,007	40,386
	가평군	59,714	59,755	59,893	60,384
강원	태백시	40,395	39,113	38,425	37,590
	삼척시	64,464	64,289	63,542	62,953
	홍천군	65,658	65,215	65,109	65,719
	횡성군	44,712	44,864	45,789	45,947
	영월군	35,728	35,654	35,581	35,449
	평창군	38,613	38,699	38,959	39,016
	정선군	33,786	33,354	32,793	32,503
	철원군	41,855	41,145	40,702	40,069
	화천군	23,092	22,545	22,372	22,278
	양구군	21,121	20,824	20,943	20,443
	고성군	26,650	27,127	27,811	27,774
	양양군	26,632	26,566	26,577	26,687
충북	제천시	133,750	130,436	131,583	130,733
	보은군	30,929	30,636	30,226	29,858
	옥천군	48,507	48,013	47,771	47,416
	영동군	45,546	43,813	44,331	43,730
	괴산군	37,526	37,830	37,607	37,346
	단양군	26,937	26,466	26,473	26,597
충남	공주시	106,915	106,038	105,498	104,393
	보령시	97,390	96,511	96,890	96,182
	논산시	117,262	116,852	115,925	114,692
	금산군	52,436	52,399	53,124	53,212
	부여군	62,415	61,481	60,991	59,930
	서천군	50,012	49,509	49,294	48,575
	청양군	30,103	29,761	29,972	29,818
	예산군	76,490	76,967	79,229	79,848
전북	태안군	60,285	60,654	60,516	60,814
	정읍시	104,463	103,255	102,507	101,887
	남원시	76,551	75,259	74,554	73,781
	김제시	77,998	78,277	79,663	79,692
	진안군	22,760	22,645	22,843	22,855
	무주군	22,305	22,296	22,401	22,904
	장수군	20,335	20,036	19,914	19,838
	임실군	24,997	24,922	24,509	24,275
	순창군	25,483	25,279	25,368	25,494
	고창군	51,180	50,784	50,731	51,371

	부안군	47,756	47,372	46,853	46,363
전남	담양군	44,034	43,572	43,763	43,310
	곡성군	26,781	26,454	26,273	25,990
	구례군	23,543	23,165	22,894	22,724
	고흥군	58,873	58,630	58,735	58,776
	보성군	36,981	36,244	35,955	36,033
	화순군	60,136	59,822	59,354	59,174
	장흥군	34,268	33,638	33,396	33,351
	강진군	31,941	31,476	31,266	31,042
	해남군	63,242	62,360	62,459	62,068
	영암군	55,998	56,287	59,689	60,323
	함평군	29,369	29,048	29,259	29,009
	영광군	48,981	49,323	49,493	50,012
	장성군	40,604	40,266	40,187	40,067
	완도군	47,210	46,863	47,655	48,182
	진도군	29,013	28,945	29,233	29,448
	신안군	34,000	34,148	34,858	35,572
경북	안동시	158,064	156,025	154,581	153,692
	영주시	102,414	101,521	100,479	99,151
	영천시	99,859	99,741	100,492	99,523
	상주시	93,722	93,208	92,990	92,458
	문경시	67,669	67,515	66,535	65,505
	의성군	48,021	47,775	47,920	47,094
	청송군	23,288	23,173	23,099	23,079
	영양군	15,558	15,333	15,197	15,059
	영덕군	33,927	33,516	33,492	32,655
	청도군	40,071	40,045	40,008	39,479
	고령군	30,399	30,142	30,518	30,934
	성주군	40,804	40,851	41,073	41,068
	봉화군	29,168	28,798	28,430	27,972
	울진군	46,369	45,954	45,697	45,274
	울릉군	8,169	8,288	8,418	8,515
경남	밀양시	101,837	101,574	102,738	102,535
	의령군	25,325	25,032	24,827	24,609
	함안군	63,233	62,409	62,173	61,675
	창녕군	59,664	58,804	58,475	57,766
	고성군	48,803	48,298	48,650	47,664
	남해군	40,870	40,491	39,706	39,011
	하동군	40,167	39,542	39,125	38,704
	산청군	33,014	32,811	32,892	32,480
	함양군	36,541	36,017	35,505	35,073
	거창군	59,238	58,702	58,588	58,393
	합천군	40,642	40,082	39,667	38,950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